운행기록장치
운수회사 교육자료
2024

국토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GS 주식회사 지엔에스

1-1

2024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안내

운영기간 | **2024.05.02~2024.12.06**

운영취지 | 운행기록장치 점검을 통해
DTG제출률을 높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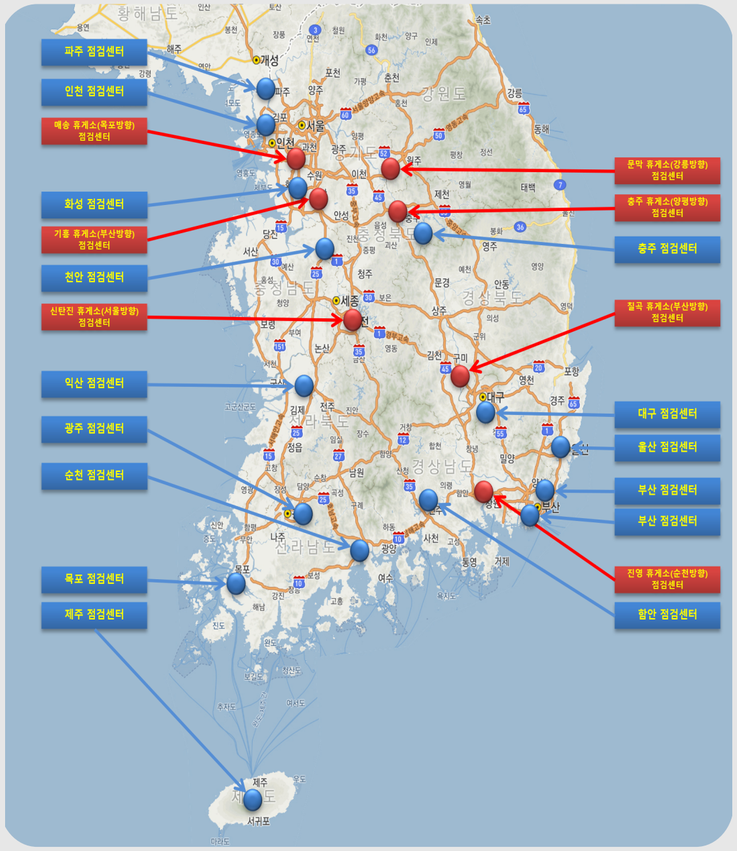
점검항목 |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행기록장치(DTG)

수 행 사 | 주식회사 지엔에스

문의전화 | 1533-2997

이 메 일 | gns5333090@naver.com

점검센터 위치 안내



NO	점검센터		주소
1	매송휴게소	목포방향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315
2	기흥휴게소	부산방향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73
3	신탄진휴게소	서울방향	대전 대덕구 산업단지로 27
4	문막휴게소	강릉방향	강원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234
5	충주휴게소	양평방향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중부내륙고속도로 230
6	칠곡휴게소	부산방향	경북 칠곡군 왜관읍 경부고속도로 159
7	진영휴게소	순천방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96번길 68
8	파주	대명공업사	경기 파주시 월롱면 정문로 474
9	인천	블루모터스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8
10	화성	코니트 운전자마트	경기 화성시 우정읍 화곡로 24
11	천안	북천안 트럭솔루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436-1
12	충주	멀티카오디오	충북 충주시 연수동 183-1
13	익산	즐거운차	전북 익산시 서동로328
14	광주	엔트랙 광주(킹스카)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412
15	목포	로드필 자동차용품점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105
16	순천	SK내트럭 순천 빅트럭	전남 순천시 백강로 614 SK내트럭 정비동
17	대구	대구물류터미널 주안기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346, 124호
18	울산	수성1급종합정비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130
19	함안	트럭커	경남 함안군 칠원읍 삼칠로126
20	부산1	부산물류터미널 엔에스모터스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119, 108호
21	부산2	SK내트럭 부산용당 더존모터스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61 , 207호
22	제주도	라온컴퍼니	제주시 아연로 329 르노코리아 자동차정비사업소 맞은편

1-2

2024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안내

- 운수회사 및 차주들의 원활한 제출을 위한 상세 안내 프로세스 개발
- 25톤 이상 대형화물차 / 트랙터의 안전운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운행기록장치 제출 이슈 확대

* 유상 수리비용 발생시 비용은 사전 공개하며, 정액제로 운영

유형	주요점검내용	비고
전원불량	전원 배선 재작업	무상
기본정보 미입력	차량번호, 사업자번호 등 기본정보 입력	무상
배선불량	배선 재작업 (배선 추가 소요 없는 경우)	무상
	배선 재작업 (배선 추가 소요 있는 경우)	유상
DTG 고정상태 불량	DTG 위치 이동 및 설치 재작업	무상
운행기록 제출	운행기록 수집 및 eTAS 업로드	무상
기타 부품 등 교체를 요하는 기기 고장	부품 수리 교체	유상

과거 점검센터 주요 목적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위주

차량번호, 사업자번호 수정, 차량정보 수정 및 등록 등
운행기록장치 수리 및 교체

»»

2024년 점검센터 주요 방향

운행기록데이터 제출 여부가 중요

e-TAS 사용법 안내
→ 회원가입 및 기초정보등록 필수 진행
→ 보급형/통신형의 미제출 차량 해결 지원

2 운행기록장치 종류

1. 보급형 DTG

모바일 앱을 통해
통신료 없이 운행기록자료를
자동으로 전송해주는 운행기록장치



앱 내에서 운전자/자동차 관련
기초정보 입력이 가능하고
운전자 다중 연동을 지원함

2. 통신형 DTG

운행기록장치에
통신 모뎀을 추가 설치하여
자동 제출이 가능한 운행기록장치



설치 비용은 저렴하나,
매 월 통신비가 발생되며
약정 기간이 있음

3. 일반형 DTG

영업용 화물차 출고시
기본 장착되어 나오는
일반형 운행기록장치



USB 또는 SD카드를 꽂아
차주가 직접 다운로드 받고
E-TAS에 업로드 해야함

»» 운행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운행 정보(순간속도, GPS, 방위각 등)를 실시간으로 저장하여 변화하는 운행상황을 기록하는 기기로, 운행기록 자료를 통해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을 분석해 운전 습관 교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 보급형은 국토부 및 교통안전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으로, 통신료가 별도로 없이 자동제출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1 운행기록장치 관련 법령 (교통안전법)

(기존) 운행기록장치 관련 법령

대상

최대 적재량 1.0톤을 초과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01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02	데이터는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에 보관되어 있을 것
03	제출명령이 나왔을 때 제출할 것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6.9] [[시행일 2021.1.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과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17.10.24,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3-2 운행기록장치 관련 법령 (교통안전법)

(추가) 운행기록장치 관련 법령

대상

25톤이상 화물차 및 10톤 이상 특수자동차

01 운행기록데이터 매 월 제출 의무 시행

02 2024년 10월 10일 부터 시행

03 매 월 데이터를 익 월 말 일 까지 제출 필수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① 법 제55조제1항 및 법률 제9866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 따라 운행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등록된 차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운행하는 차량: 2012년 12월 31일

나.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2013년 12월 31일

2. 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신규등록일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8.4.24, 2024.4.9] [[시행일 2024.10.1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운행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차량의 운행기록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4.9] [[시행일 2024.10.10]]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2.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6.29] [[시행일 2010.6.30]]

□ 법률개정 주요 내용 요약

○ 운행기록자료 정기적 제출(매월) 대상을 현행 "노선버스"에서 "25톤이상 대형화물자동차 및 트랙터"로 확대
(시행령 안 제45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대형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견인형 특수 자동차 중 총중량 10톤 이상.

※ 신설 : 2024년 4월9일 (유예기간 6개월 적용)
시행 : 2024년 10월10일 시행예정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 中>

13.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 50만원/100만원/150만원

14.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 제2항 제10호) : 50만원/100만원/150만원

4-1 운수회사 데이터 제출 업무 프로세스

모든 과정은 운수회사의 아이디/패스워드로 로그인 후 진행됩니다.
(운수회사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분실하신 경우 054-459-7244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타스 내 기초정보 등록

16페이지를 참조하여
현재 운수회사에 소속된
차량 현황과 일치하게 등록

이타스 내 제출현황 확인

11페이지를 참조하여
제출/미제출 차량을 구분

미제출 차량 제출독려

7페이지를 참조하여
미제출 차량에 제출요청 문자발송

제품별 처리방법

보급형 미제출시 > 제조사 문의
통신형 미제출시 > 관제사 문의
일반형 미제출시 > 점검센터 안내

현장방문 제출용 보고서

17페이지 참조
기기고장의 경우 AS확인서 첨부
> 제조사 또는 점검센터 문의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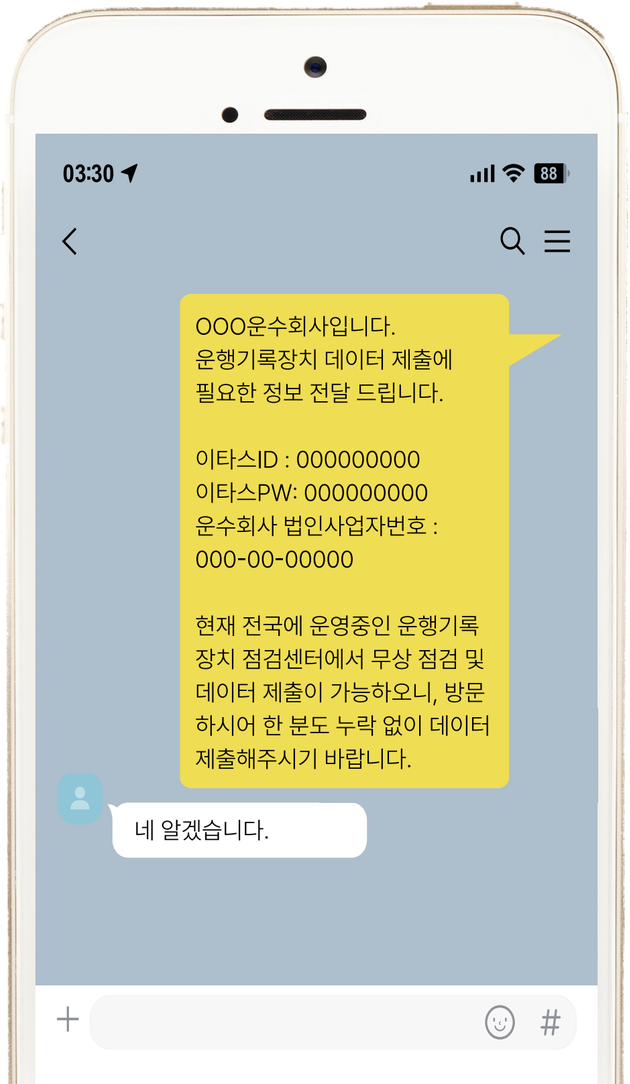
정상적인 데이터 제출을 위해
차주가 알고 있어야하는 정보

보급형
핸드폰 어플 설치 → DTG 내 차량번호 / 차대번호 / 사업자 번호 확인
→ 설치 직후 정상 제출 확인 필요 → 제출이 안되는 경우 제조사 상담센터 문의

통신형
설치 및 개통 → 해당 관제사에 사업자번호 확인 → 운수회사 이타스 ID/PW전달
→ 초기 1~2회 정상 제출 확인 필요

일반형
DTG내 차량번호 / 사업자번호 확인 → 저사양USB준비 → 다운로드 방법
→ (필요시) 데이터 파일변환 방법 → 이타스 제출방법 → 무료 제출 대행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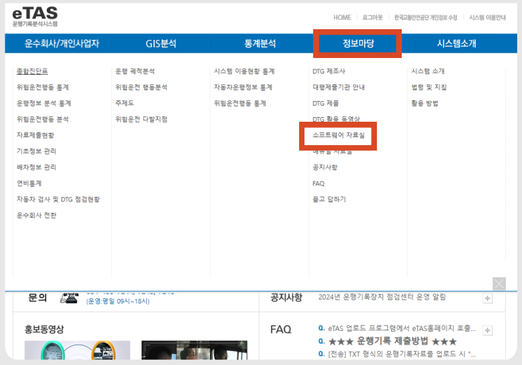
↓ 실제 운수회사의 문자 전송 예시



5-1 운행기록데이터 제출 및 변환프로그램 사용법

모든 과정은 운수회사의 아이디/패스워드로 로그인 후 진행됩니다.

(운수회사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분실하신 경우 054-459-7244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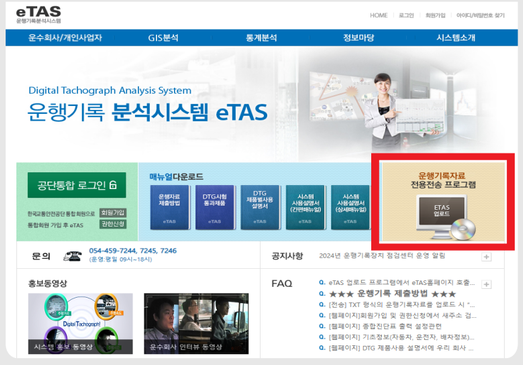


변환 프로그램

[정보마당 → 소프트웨어 자료실] 내 변환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서 사용

※ 사용 매뉴얼 모두 함께 올라와 있음

- 이타스 프로그램 관련 문의 054-459-7244,7246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
- 기타 변환이 어려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문의 1533-2997 (원격 지원 서비스 가능)
 하거나, 이메일(gns5333090@naver.com)로 보내주시면 무료 제출 대행



제출 프로그램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운행기록자료 전용전송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다운 진행

→ 다운로드 된 클라이언트 압축을 해제하여 프로그램을 실행

→ 운수회사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우측 상단 [파일추가]를 클릭하여 변환 된 데이터를 첨부

→ 진행 단계가 '전송가능'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후, 하단의 [전송시작]버튼을 클릭

5-2 데이터 제출 시 발생하는 오류 예시

설정값오류	데이터오류	서버오류	기타 오류들
운행기록장치에 사용자 정보 입력을 잘못한 경우	운행기록장치 오동작으로 잘못된 자료가 저장된 경우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 서비스 문제로 발생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오류 내용 사례
자동차에 있는 운행기록장치에 사용자정보를 부정확하게 입력(설정)한 경우 발생합니다. 사용자 설정값(차량번호/사업자번호)을 직접 입력하거나, DTG 제조사에 사용자 설정값 입력 부분에 대해 문의하여 조치 하시면 해결됩니다.	화물차에 설치된 운행기록장치의 일시적 오동작, 고장, 배선연결문제 등으로 자료가 정상적으로 저장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예시. 메모리 / GPS 고장 등) 계속 동일한 문제 발생시 운행기록장치 점검(또는 수리)을 받으셔야 합니다.	운행기록분석시스템 또는 개인용컴퓨터(PC)에 문제가 발생하는 오류내용입니다.	1. 0.01초 데이터로 다운 받는 경우 제출이 불가능 합니다. 2. 항만 내 운행 등 짧은 시간만 운행하는 경우 (10분 미만의 운행기록) 데이터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3. 차량의 속도가 정상적인 속도값을 초과하면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화물차 기준 180KM 초과속도)

5-3 이타스 홈페이지 기초정보 등록

각 차량별 기초정보등록이 되어 있어야, 운행기록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운수회사에 없는 차량의 번호가 있는 경우 과감하게 삭제하셔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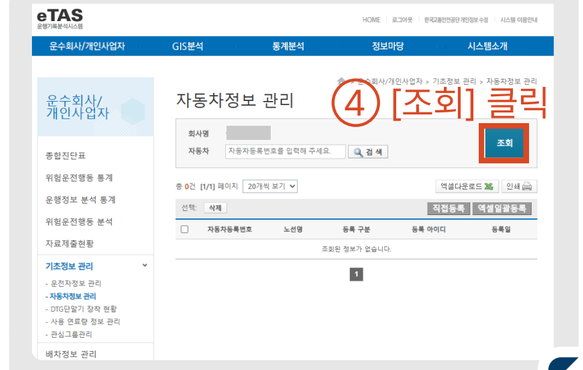
STE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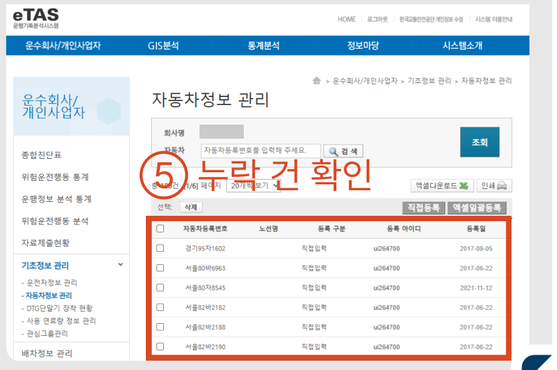
STE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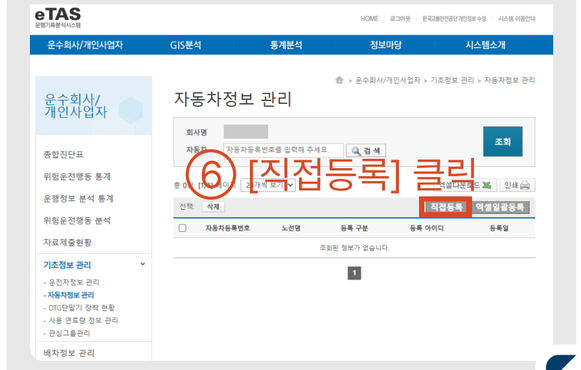
STE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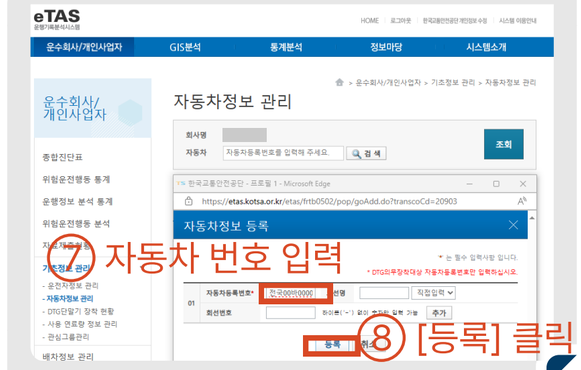
STE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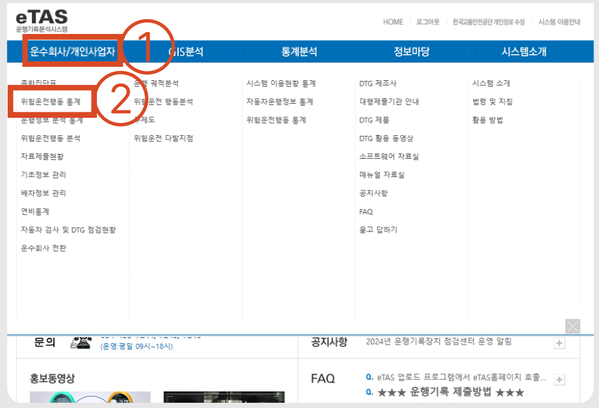
STEP 5



STEP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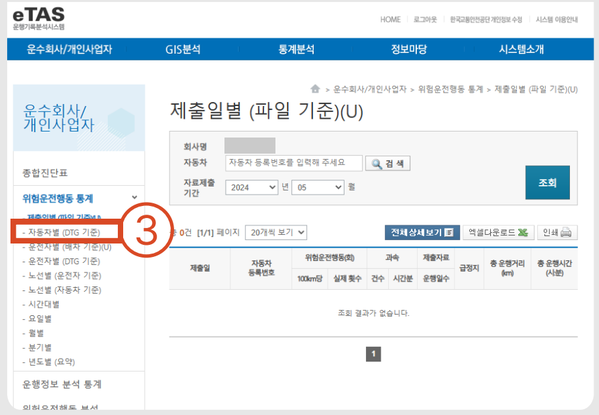


5-4 이타스 홈페이지 제출현황 확인



STEP 1

① 홈페이지 상단의 [운수회사/개인사업자] 클릭
② [위험운전행동 통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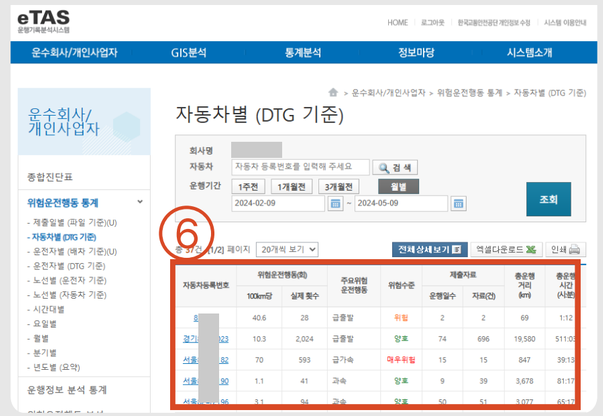
STEP 2

③ 홈페이지 좌측의 [자동차별 (DTG기준)] 클릭



STEP 3

④ [3개월간] 클릭
⑤ [조회] 클릭



STEP 4

⑥ 조회된 차량번호를 참고하여 미제출 차량을 확인

6

미제출 차량 처리 방법

물리적 사유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Q : A/S로 인해 제출 기한 내에 제출을 못해요

A : 제품 고장으로 인해 수리를 요하는 경우
대부분 제품 탈거 및 택배 배송을 통해 수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되어 제출 기간 내 제출 불가하므로
"A/S확인서 발급 및 제출"을 통해 기간을 연장합니다.

Q : 항만 내 운행 등 짧은 운행거리로 인한 제출 불가능

A : 10분 미만으로 짧게 운행하는 경우 데이터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이타스 프로그램에서 [제출 불가능 팝업이 나오는 화면]을
캡쳐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 차량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오류로 인한 제출 불가능

A : 차량번호가 잘 못 된 경우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차량번호 수정하신 후
최소 1주일 정도 운행 후 1주일치 다운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이 어려워 "못하고 있는" 경우

제출을 어려워하시는 차주분들께는 기본적으로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방문을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Q : 야간에만 운행하거나, 점검센터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A : 1533-299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드리거나, 인근 지역의 점검받을 수 있는
자발적점검센터를 안내드리겠습니다.

Q : 변환이 어려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A : 다운받은 운행기록을 카카오채널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출대행 해드립니다.
[필수 기재 사항 : 운수회사명, 차량번호, 운수사 이타스 ID/PW]

카카오채널 : 티케어 - 화물차 전용 플랫폼
이메일 : gns5333090@naver.com

https://kotsa.or.kr/cosas/

7

운수안전 컨설팅 분석시스템

운수안전컨설팅지원시스템은
안전관리대상에 대한
종합현황정보를 제공합니다.

운수회사의 종합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운수안전컨설팅지원시스템"검색



#빅데이터시스템 #정보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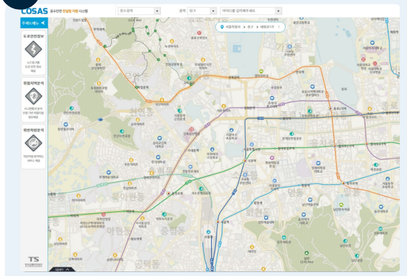
- 다양한 정보를 빅데이터시스템을 이용/분석하여, 운수회사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지원합니다.
- 주요교통사고 발생요인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유한 다양한 요인 분석을 통해 안전진단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관리시스템입니다.
- 안전관리대상에 대한 종합현황정보를 제공하며, DTG관련 정보 및 위험운수업체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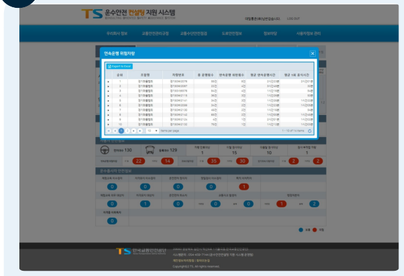
- 운수회사 별 종합 안전정보

2



- 차량별 운행기록

3



- 연속운전 위험차량 현황
(휴게시간 미준수)

8-1 카카오채널 소개

대표전화 1533-2997

운행기록장치 전문 카카오채널 "티케어-화물차 전용 플랫폼" 오픈

01 

2024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안내

02 

운행기록장치 점검매뉴얼 안내

03 

운행기록데이터 제출 대행 안내

04 

운수회사 데이터 제출 관리 방법 안내

05 

운행기록장치 종류별 제품 소개 (보급형 안내)

06 

트랙터 및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 운행기록데이터 매월 의무제출 안내

07 

운수안전컨설팅지원시스템 소개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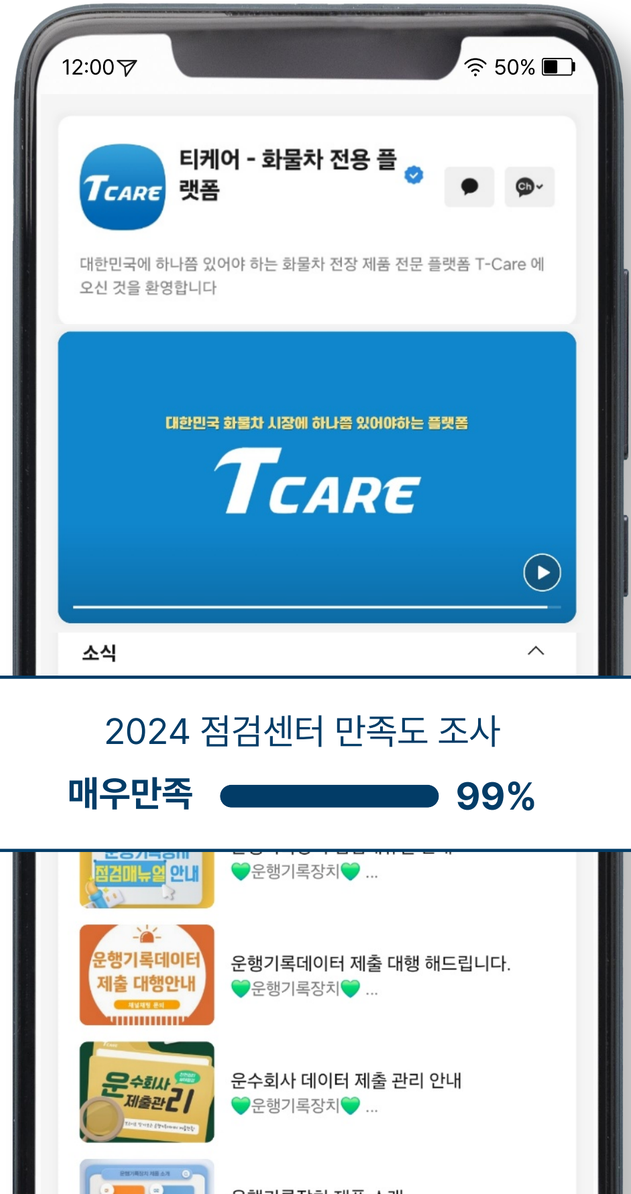
운행기록장치 관련 자주하는 질문

09 

2024 교통수단 안전검검 실시 안내

10 

기타 화물차 지원사업 및 중요 소식



2024 점검센터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99%

8-2 운행기록장치 점검매뉴얼 안내

대표전화 1533-2997





»» 점검매뉴얼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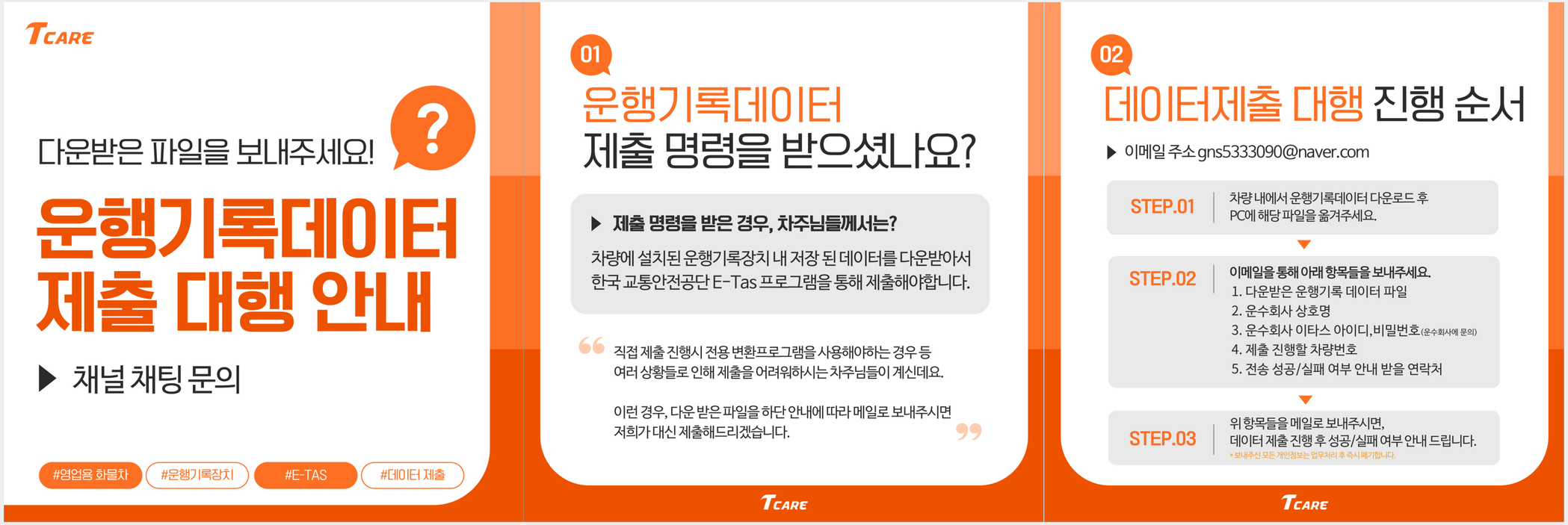
- 80여종 이상의 점검매뉴얼 포함 (센터 배포 중)
- 각 제품별로 사진으로 색인 수록
- 제조사별 연락처 및 A/S 가능 주소 수록
- 홈페이지 매뉴얼은 점검동영상 추가

»» 제조사별 설치배선도 제공

- 차량에 설치된 기존 제품을 점검할 때 필요
- 배선 단선/결선 등 발생시 빠르게 조치 가능
- 배선 노후화 등으로 배선재설치시 필요
- 지속적으로 배선도 추가 예정

8-3 운행기록데이터 제출대행 안내

대표전화 1533-2997 | 이메일 gns533309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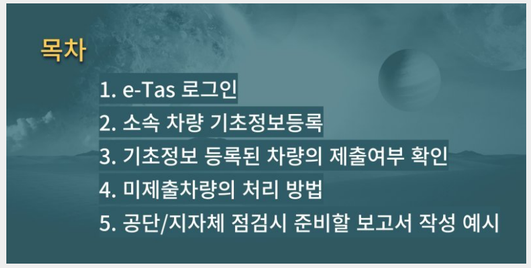
»» 운수회사 및 화물차 차주님들을 위해 연 중 상시 무료 제출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

»» 차주가 직접 채널 내 점검매뉴얼을 활용하여 운행기록데이터 다운로드 후, 해당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제출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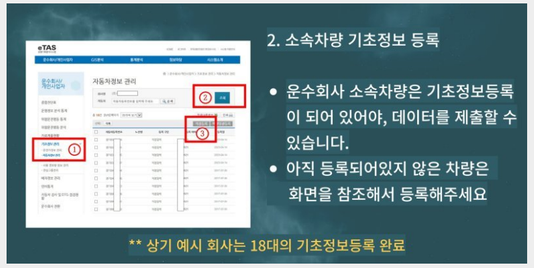
8-4 운수회사 데이터 제출관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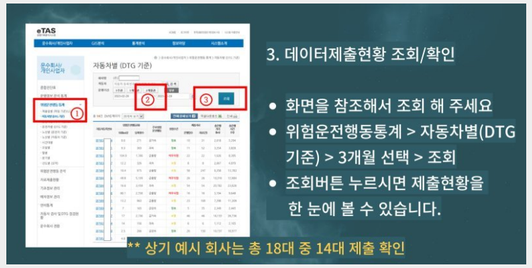
대표전화 1533-2997 | 이메일 gns533309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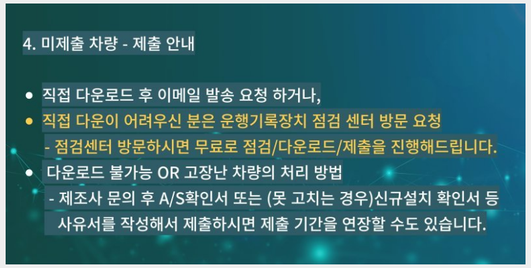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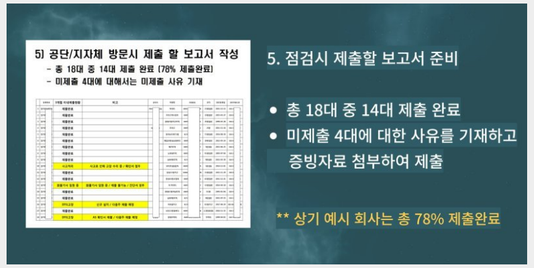












»» 각 운수회사 별 운행기록데이터 제출 비율 관리방법 안내

»» 기초정보등록 / 제출현황 확인 / 미제출차량 처리방법 안내 / 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8-5 카카오채널 소개 대표전화 1533-2997

영업용화물차 "운행기록장치 전용 카카오채널"입니다.

-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안내
- 운행기록장치 점검매뉴얼 안내
- 운행기록데이터 제출 비율관리 방법 안내
- 기타 화물차 관련 안내자료

운행기록장치 관련 필요한 자료를 업로드 해 두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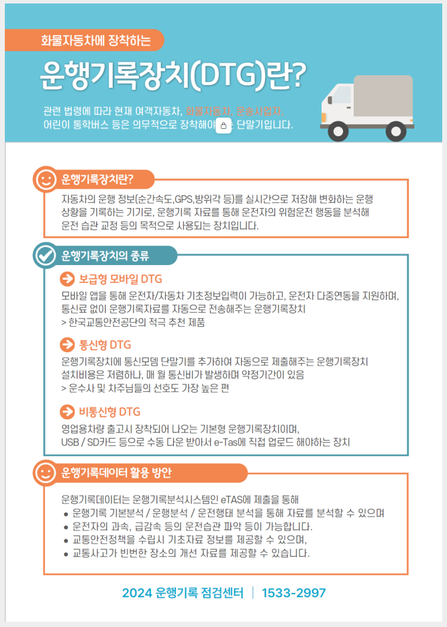
<주요 서비스 및 활용방법 안내>
본 채널은 연 중 상시로 운영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톡방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례1) 카카오채널 톡방 혹은 이메일로 운행기록데이터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출대행을 해드립니다.
- (사례2) 통신형/보급형을 장착중인데 제출이 안되시는 경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조치를 할 수 있는 관제사 및 서비스센터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 (사례3) 이타스회원가입/기초정보등록/제출비율 조회 등 이타스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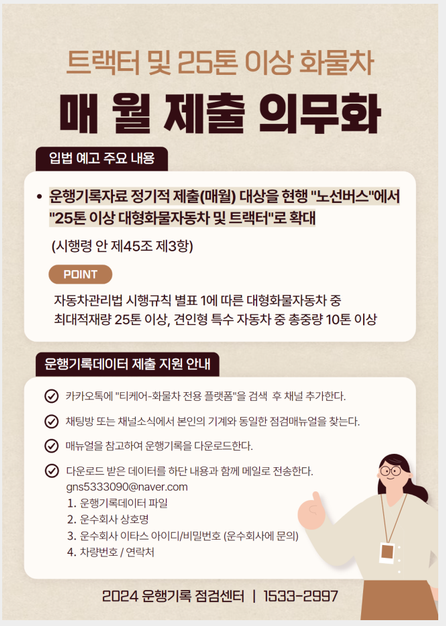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검센터가 되겠습니다.











↑ 현재 배포되고 있는 전단지 및 포스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검센터가 되겠습니다.

- 점검센터 홈페이지 http://2024dtg.co.kr
-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콜센터 1533-2997
- 카카오채널 [티케어-화물차 전용 플랫폼] 검색

홈페이지 QR코드 >>>

카카오채널 QR코드 >>>

